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6
------	------

2023.12.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태균 경제정책실장)

가. 제안이유

-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 소관사항과 고유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부서로 운용 주체를 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관리공무원(제7조)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제9조)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운용 부서를 이전
- 기타 조문의 문구와 어휘를 정비

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운용부서를 ‘경제정책과’에서 ‘창업정책과’로 변경하기 위해 기금관리공무원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제출됨.

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부서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기금 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기금법 제1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각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9조에서 각 계정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각 계정별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음.

< 기금운용관 및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 >

- ▶ 기금운용관 관련 규정(제7조 관련)
 -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담당정책관
 - 분임기금운용관
 -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 나.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 기금출납원
 -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지원 담당사무관
 - 나. 투자계정 : 펀드조성 및 운용 담당사무관
 - 다. 사회적경제계정 :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
- ▶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제9조 관련)
 - 위원장 : 계정별 기금운용관
 - 당연직 위원
 - 가. 융자계정 : 소상공인담당관
 - 나. 투자계정 : 경제정책과장
 - 다. 사회적경제계정 : 공정경제담당관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이하 “투자계정”)의 기금 총괄은 경제정책과에서, 투자계정의 운용 목적인 펀드 조성과 관리는 창업정책과에서 수행해 왔으나 ‘서울 Vision 2030 펀드’의 추진으로 인해 기금 규모가 확대²⁾되면서 기금의 총괄부서와 운용부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투자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과 당연직 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기금의 총괄·운용부서를 ‘창업정책과’로 일원화한 것으로, 투자계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종전에 투자계정을 통해 조성된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2019~2022)는 3조 6천억원 규모(당초목표 1조 2천억원)이며, 서울비전 2030 펀드(2023~2026)의 조성목표는 5조원으로 서울시 출자규모도 증가되어 1,751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가됨.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06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해 소관사항과 고유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부서로 운용 주체를 이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관리공무원(제7조)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제9조)을 ‘경제정책과장’에서 ‘창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의 운용 부서를 이전

나. 기타 조문의 문구와 어휘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벤처투자 촉진의 관한 법률 제71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조례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8. 24.~9. 1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고성한(☎2133-523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제정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을 “(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을 “(심의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안건”을 “안건 심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③ (생략)	제4조(기금의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서울특별시</u>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시의 기금전출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전출할 수 있다.	④ <u>서울특별시</u> 장----- ----- ----- -----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분임기금운용관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투자계정 : <u>경제정책과</u> 장	나. ----- <u>창업정책과</u> 장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8조(<u>기금운용심의회</u>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 ② (생 략) 제9조(<u>기금운용심의회</u>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투자계정 : <u>경제정책과장</u> 3. · 4. (생 략) ③ (생 략) 제10조(<u>기금운용심의회</u>의 운영) ① ~ ④ (생 략)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u>안</u>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u>심의회</u>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u>심의회</u>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u>창업정책과장</u> 3.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u>심의회</u>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안</u> <u>건 심의</u>-----.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부서 간에 기존 기금의 관리 소관을 단순 이전하는
사안이기에 부수 비용이 미발생

4. 작성자

경제정책과 행정6급 고성한(02-2133-5234)